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35호 2014. 4. 30.(수)

## 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4-57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----- 2
- 사천시 고시 제2014-58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승인신고 수리사항 고시 -- 6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# 사 천 시 공 보

제335호(2)

## 고 시

사천시 고시 제 2014 - 57 호

#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4. 30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4-2호(204. 4. 14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- 어선의 안전관리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및 도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 보호, 어로활동 지원
  - 378㎡(직접 378㎡, 간접 - ㎡)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55-6번지선 공유수면(종포항)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
  - 공사기간 : 2014. 4. 29. ~ 2014. 7. 30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: 2014. 4. 14.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 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335호(3)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4. 30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4-3호(204. 4. 14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  
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  
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- 어선의 안전관리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및 도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 보호, 어로활동 지원  
- 660㎡(직접 660㎡, 간접 - ㎡)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1055-1지선 공유수면(검정항)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
  - 공사기간 : 2014. 4. 29. ~ 2014. 7. 30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: 2014. 4. 14.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 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335호(4)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4. 30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4-4호(204. 4. 14)
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
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
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
○ 어선의 안전관리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및 도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 보호, 어로활동 지원

- 700㎡(직접 700㎡, 간접 - ㎡)
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
○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-210번지선 공유수면(하봉항)
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

○ 공사기간 : 2014. 4. 29. ~ 2014. 7. 30.
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: 2014. 4. 14.
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
○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
○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335호(5)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4. 30.

#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4-5호(204. 4. 14)
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
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
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
○ 어선의 안전관리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보호, 어로활동 지원

- 567㎡(직접 567㎡, 간접 - ㎡)
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
○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449-4번지선 공유수면(신소항)
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

○ 공사기간 : 2014. 4. 29. ~ 2014. 7. 30.
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: 2014. 4. 14.
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
○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
○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335호(6)

사천시 고시 제 2014-58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승인신고 수리 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4. 30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4-6호(2014. 4. 22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- 기존 선착장 협소로 인하여 선박접안 및 어로활동에 불편이 상존하고 태풍 시에는 어선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
  - 선착장 : 465㎡(직접 : 130㎡, 간접 : 335㎡), (L=26.0m, B=5.0m)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마도동 151-11번지선 공유수면(저도항)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
  - 공사기간 : 2014. 4. 30. ~ 2014. 11. 28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: 2014. 4. 30.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 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335호(7)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4. 30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4-7호(204. 4. 22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- 기존 선착장 협소로 인하여 선박접안 및 어로활동에 불편이 상존하고 태풍 시에는 어선보호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
  - 선착장 : 380㎡(직접 : 175.0㎡, 간접 : 205.0㎡), (L=36.0m, B=5.0m)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7번지 공유수면(중촌 항)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
  - 공사기간 : 2014. 4. 30. ~ 2014. 11. 28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: 2014. 4. 30.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 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